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128
----------	-------

발의연월일 : 2026. 9. 7.

발 의 자 : 박형수 · 김종양 · 이달희
조정훈 · 백종현 · 김소희
구자근 · 고동진 · 임종득
김석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퇴직자 등에 대한 접근권한 말소 조치 의무와 그 권한 부여·변경·말소 기록의 보관 의무가 법률이 아닌 행정규칙에만 규정되어 있어, 규범력이 떨어지고 이를 위반하더라도 직접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한계로 인하여 퇴직하거나 부서가 이동된 직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 변경 시 접근권한 변경·말소 의무와 해당 내역의 기록 및 3년 보관 의무를 법률로 상향하여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며 사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

항 및 제3항 신설 등).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퇴직 또는 전보 등으로 인하여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데이터베이스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접근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에 따른 접근 권한의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기록한 날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75조제2항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제28조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지체 없이 변경 또는 말소하지 아니한 자

3의3. 제28조제3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접근 권한의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기록한 날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생략) <u><신 설></u>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현행과 같음) <u>② 개인정보처리자는 퇴직 또는 전보 등으로 인하여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데이터베이스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접근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u>
<u><신 설></u>	<u>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에 따른 접근 권한의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기록한 날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u>
② (생략)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제75조(과태료) ① (생략)	제7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 -----.

1. ~ 12. (생략) <u><신설></u>	1. ~ 12. (현행과 같음) <u>12의2. 제28조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지체없이 변경 또는 말소하지 아니한 자</u>
13. ~ 27. (생략)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략) <u><신설></u>	13. ~ 27.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 -----.
4. ~ 12. (생략) ⑤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u>3의3. 제28조제3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접근 권한의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기록한 날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지 아니한 자</u> 4. ~ 12.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